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03

발의연월일: 2021. 5. 26.

발 의 자:서영교·김민철・박상혁

신정훈・양정숙・오영환

임오경 • 유정주 • 진선미

한병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재난지역과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사업 전환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 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1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될 예정임.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서의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위기지역의 고용안정을 저해하고 경제여건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위기지역에서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위기지역의 고

용안정 및 경제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5조의3제1항).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등에 대한 감면) ①
호의 지역(이하 이 조에서 "위	
기지역"이라 한다)에서 제58조	
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	
하는 중소기업이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전환을 위하여 같은 법 제8조	
에 따라 <u>2021년 12월 31일</u> 까지	<u>2025년 12월 31일</u>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고 사	
업전환계획 승인일부터 3년 이	
내에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	
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	
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경감하고, <u>2021년 12</u>	<u>2025년 12</u>
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	월 31일
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과세기	
준일 현재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경감한다.

- 1. ~ 3. (생략)
- ② ~ ③ (생 략)

4 0 (515) 1 -1 6)

- 1. ~ 3.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